

의안번호	2208386
의 퇴 인	송재봉 의원
회 답 일	2025. 4. 17.
추계번호	25B1061

중부권 거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2항)	
2	안 제8조(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의 시행자)	「공항시설법」에 따른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함(제1항)	의무규정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제2항)	
3	안 제9조(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등)	제8조에 따른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실시계획의 수립·승인·고시에 관한 절차는 「공항시설법」 제7조에 따름(제1항)	의무규정
4	안 제11조(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제1항에 따른 주변개발예정지역의 범위, 지정절차 및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의무규정
5	안 제12조(민간전용 활주로 건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 등)	제8조에 따른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함(제1항) 1.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2.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사업 3. 공항과 연계되는 철도,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사업 4.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	의무규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 주변지역의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제8조에 따른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의 시행자는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자의 생계지원, 이주정착 또는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3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주자의 원활한 정착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음. 이 경우 이주 택지의 조성 등을 위한 사업에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할 수 있음(제4항)	
6	안 제13조(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추진단)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민간전용활주로건설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둠(제1항)	의무규정
7	안 제14조(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을 위한 협의기구)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는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8	안 제15조(재정 지원)	국가는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	재량규정
9	안 제16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하천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하천 점용료·사용료,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음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0	안 제18조(민간자본 유치사업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 예정지역에서 민간자본 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제1항) 1.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2.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 등의 매입 업무의 대행 3. 민간개발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 부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재량규정
11	안 제21조(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시설법」 제4조에 따른 토지등의 세목을 포함하여 공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봄(제1항)	의무규정
12	안 제22조(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의 기능을 변경하여 산업단지의 종류를 전환할 수 있음. 이 경우 전환의 요건·절차 등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를 따름	재량규정
13	안 제23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특례)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

Ⅲ. 미첨부 사유

- 제정안은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 등을 통해 민·군겸용공항인 청주국제공항의 항공 노선을 확대하고, 여객·물류 중심의 복합공항 기능을 확보하여 청주국제공항을 중부권 거점 공항으로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 제정안은 이를 위해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에 필요한 실시계획의 수립,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및 개발사업의 실시,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추진단 및 협의기구 설치, 국가의 재정 지원, 부담금 등의 감면 등을 규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 발생 및 부담금 수입 감소가 예상됨
 -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안 제8조)
 - 실시계획의 수립(안 제9조)
 -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및 개발사업의 실시(안 제11조)
 -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안 제12조)
 -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추진단(안 제13조)
 -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 관련 국방부-국토교통부 협의기구 설치·운영(안 제14조)
 - 국가의 재정 지원(안 제15조)
 - 부담금 등의 감면(안 제16조)
 -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특례(안 제21조)
 -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특례(안 제22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특례(안 제23조)

- 다만, 현 시점에서는 제정안에 따른 청주국제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각 조항별 재정소요 및 수입감소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8조¹⁾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7조²⁾ 등에 따라 청주국제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을 위한 사업의 목표, 규모, 소요예산 등 사업의 기본구상과 구체성 확보를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 필요하고,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이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총사업비를 산정할 수 있다는 의견임
- 안 제12조의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 안 제13조의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 추진단 설치 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유사사업인 공항소음대책 사업(2025년 예산 129억원)의 사례와 가덕도신공항건설 추진단 운영(2021~2023년 연평균 사업비 2억 5,000만원) 사례 등을 참고할 수 있으나, 중부권 거점 청주국제공항의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 사업에 특정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합리적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할 수 있을 것임

Ⅲ. 부대의견

□ 없음

-
-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8조(기본구상)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공사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개요(이하 "기본구상"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1. 공사의 필요성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이하 "도시·군관리계획"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성
 3. 공사의 시행에 따른 위험요소의 예측
 4. 공사예정지의 입지조건
 5. 공사의 규모 및 공사비
 6. 공사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7.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동일하거나 유사한 건설공사의 사후평가서의 내용
 8. 건설사업관리의 적용 여부, 공사의 기대효과,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발주청은 기본구상을 마련할 때에는 제86조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참고하여야 한다.
- 2)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7조(사업간 우선순위의 검토 및 사업계획의 구체성 확보)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에 앞서 사전용역 등을 통하여 사업의 목표, 사업규모, 추진체계, 소요예산, 운영주체, 운영계획 등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nabo.go.kr

[참고자료] 청주국제공항 개요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 공항시설 배치도



□ 시설 현황

부지면적	■ 1,909,645㎡
활주로	■ 규격 : 총 2본(06L-24R : 2,744m×60m/민·군겸용, 06R-24L : 2,744m×45m/군전용) ■ 연간처리능력 : 14.1만회(실적 : '22년도 1.9만회, '23년도 2.3만회, '24년도 2.8만회)
유도로	■ 평행유도로 1본, 직각유도로 11본
착륙대	■ 규격 : (06L-24R) 2,864m×300m / (06R-24L) 2,864m×300m
계류장	■ 면적 : 120,390㎡ ■ 동시주기능력 : 21대 (일반 13 / 소형 8대)
여객터미널	■ 국내선 : (연면적) 13,644㎡, (연간처리능력) 289만명 (여객실적 : '22년도 317만명, '23년도 317만명, '24년도 311만명) ■ 국제선 : (연면적) 16,282㎡, (연간처리능력) 152만명 (여객실적 : '22년도 0.3만명, '23년도 52만명, '24년도 147만명)
화물터미널	■ 국내선 : (연면적) 1,667㎡, (연간처리능력) 3.3만톤 ■ 국제선 : (연면적) 590㎡, (연간처리능력) 0.5만톤 ■ '21년 1.3만톤(국내 1.3만톤), '22년 1.7만톤(국내 1.7만톤, 국제 0.003만톤), '23년 2.1만톤(국내 1.6만톤, 국제 0.5만톤), '24년 2.8만톤(국내 1.6만톤, 국제 1.2만톤)
운항횟수	■ '21년도 1.7만회, '22년도 1.9만회, '23년도 2.3만회, '24년도 2.8만회
주차장	■ 면적 : 164,404㎡ / 주차면수 : 5,267면

* 활주로 운영등급 : (24R/06L) CAT-I, (24L/06R) 정밀(PAR)